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26호)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번호 변경 제1항 6.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27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6. <삭제> 6.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인 Best 신종 MMF 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신종 MMF 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및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및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5.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29호)

6.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7.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8.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번호 변경 제1항 7.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27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7. <삭제> 7.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변 경 대 비 표

9. 펀드명 : 하나UBS 인Best 신종MMF(K-1호)[국공채]

10. 주요 변경내용
    1) 종류형 및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A-U 클래스 신설

11.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12.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 : BR328 종류 A-U : BR214
제2조(용어의 정의)	<추가>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전환형(엄브렐러)" 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4. (생략, 현행과 동일) 5. 종류형 6. 전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C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A-U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 (신탁금의 납입)	② (생략)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현행과 동일)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2. 종류 A-U 수익증권

		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신설>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2.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3.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4.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7. 하나UBS 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8.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9.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②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 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2.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3.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④제3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

		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제3항제3호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⑤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5시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2. 제3항제3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3. 제3항제4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⑥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

		다. ⑦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생략)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9조 (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446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374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446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374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 A-U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446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제40조 (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신설>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분류
<추가></td><td>분류
종류형, 전환형</td></tr>
<tr><td>I.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
<table>
<tr><td colspan="2">가입자격</td><td>개인투자자</td></tr>
<tr><td colspan="2">판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 colspan="2">환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 rowspan="6">보수(연, %)</td><td>운용</td><td>0.1446%</td></tr>
<tr><td>판매</td><td>0.3374%</td></tr>
<tr><td>신탁업자</td><td>0.0300%</td></tr>
<tr><td>일반사무</td><td>0.0180%</td></tr>
<tr><td>기타</td><td>0.0067%</td></tr>
<tr><td>총보수·비용</td><td>0.5367%</td></tr>
</table>
</td><td>
<table>
<tr><td colspan="2">Class</td><td>C</td><td>A-U</td></tr>
<tr><td colspan="2" rowspan="2">가입자격</td><td colspan="2">개인투자자</td></tr>
<tr><td>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td><td>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td></tr>
<tr><td colspan="2">판매수수료</td><td>없음</td><td>납입금액의 0.5% 이내</td></tr>
<tr><td colspan="2">환매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r>
<tr><td rowspan="6">보수(연, %)</td><td>운용</td><td>0.1446%</td><td>0.1446%</td></tr>
<tr><td>판매</td><td>0.3374%</td><td>0.1000%</td></tr>
<tr><td>신탁업자</td><td>0.0300%</td><td>0.0300%</td></tr>
<tr><td>일반사무</td><td>0.0180%</td><td>0.0180%</td></tr>
<tr><td>기타</td><td>0.0067%</td><td>-</td></tr>
<tr><td>총보수·비용</td><td>0.5367%</td><td>0.2926%</td></tr>
</table>
</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3.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td>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td><td>2. 전환절차 및 방법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1></td></tr>
</table>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변경에 따른 C, A-U 코드 기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 : BR328 종류 A-U : BR21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전환형(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변경에 따른 C, A-U 코드 기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 : BR328 종류 A-U : BR21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종류형 및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A-U 클래스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개인투자자

<신설>

<신설></td>
<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개인투자자 종류형, 전환형

나. 종류형 구조
<별첨 1>

다. 전환형 구조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 2></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가입대상
-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종류형 가입자격 내용 추가>

<신설></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가입대상
-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C</td><td>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td></tr>
<tr><td>종류 A-U</td><td>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td></tr>
</table>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별첨 3></td>
</tr>
</tabl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석추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 2)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종류별로 부과되는 판매보수·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첨 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첨 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현행과 동일)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추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별첨1>

2. 전환절차 및 방법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펀드명	종류	선취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 (K-1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0.8000%	연1.7526%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0.8000%	연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0.8094%	연1.6000%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A-U	1.0% 이내	연0.8374%	연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0.8000%	연1.5480%	
하나 UBS 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0.3400%	연0.9480%	
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호)[국공채]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0.1000%	연0.2926%	
하나 UBS 신종 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연0.0784%	연0.1320%	
하나 UBS 신종 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0.1500%	연0.2800%	

투자설명서 <별첨1>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선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판매보수
종류 A-U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	납입금액의 0.5%이내	없음	연 0.1000%
종류 C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	없음		연 0.3374%

<별첨2>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8000%	연 1.7526%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8000%	연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 0.8094%	연 1.600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A-U	1.0% 이내	연 0.8374%	연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 0.8000%	연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3400%	연 0.9480%	
하나 UBS 인 Best 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 0.1000%	연 0.2926%	
하나 UBS 신종 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연 0.0784%	연 0.1320%	
하나 UBS 신종 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 0.1500%	연 0.2800%	



<별첨3>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8000%	연 1.7526%	전환가능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8000%	연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 0.8094%	연 1.600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A-U	1.0% 이내	연 0.8374%	연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 0.8000%	연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3400%	연 0.9480%	
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호)[국공채]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 0.1000%	연 0.2926%	
하나 UBS 신종 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연 0.0784%	연 0.1320%	
하나 UBS 신종 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 0.1500%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으로 합니다.

①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및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5시30분 이전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30분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및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5시30분 이전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30분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③ 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호)[국공채], 하나UBS 신종MMF(S-29호) 및 하나 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7시 이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④하나UBS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4시 이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3) 전환시 유의사항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 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첨4>

변경전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가입대상	개인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1446%	매 6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374%	
신탁업자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보수합계	0.5300%	
기타비용주 1)	0.0067%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주 2)	0.5367%	
증권 거래비용주 3)	0.0017%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1,000원)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총보수·비용	54	169	297	675

변경후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A-U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납입금액의 0.5%이내	납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A-U	
집합투자업자보수	0.1446%	0.1446%	매 6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374%	0.1000%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보수합계	0.5300%	0.2926%	
기타비용주 1)	0.0067%	-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주 2)	0.5367%	0.2926%	
증권 거래비용주 3)	0.0017%	-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1,000원)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	54	169	297	675
종류 A-U	30	95	166	377

변 경 대 비 표

13.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4.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15.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16.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번호 변경 제1항 7.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7. <삭제> 7.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7. 펀드명 :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18.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19.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20.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6.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1항 6. <삭제> 6.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제52조의3(투자신탁의 전환2)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신종MMF(S-51호)" 및 "하나UBS신종MMF(S-26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 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다만,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 및 "하나UBS신종MMF(S-26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 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다만,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21. 펀드명 :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2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2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2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7.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1항 7. <삭제> 7.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제52조의3(투자신탁의 전환2)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신종MMF(S-51호)" 및 "하나UBS신종MMF(S-26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 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다만,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 및 "하나UBS신종MMF(S-26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 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다만,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전환형 구조 2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종 MMF [개인: 신종 MMF(S-51호), 신종 MMF(S-26호) / 법인: 신종 MMF(S-29호)]**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신종 MMF(S-51 호)" 및 "신종 MMF(S-26 호)"로 전환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신종 MMF(S-29 호)"로 전환됩니다.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전환형 구조 2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종 MMF [개인: 인 Best 신종 MMF(K-1호)[국공채], 신종 MMF(S-26 호) / 법인: 신종 MMF(S-29호)]**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및 "신종 MMF(S-26 호)"로 전환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신종 MMF(S-29 호)"로 전환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

	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25. 펀드명 :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6.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27.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28.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번호 변경 제1항 7.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7. <삭제> 7.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 (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29. 펀드명 :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30.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31.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32.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번호 변경 제1항 6.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6. <삭제> 6.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변 경 대 비 표

33. 펀드명 :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34.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추가

35. 변경효력발생일 : 2017.06.07

36.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번호 변경 제1항 6.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제27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6. <삭제> 6.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6 월 07 일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추가 -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신종 MMF(S-51 호),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이내 판매보수 : 연 0.1000% 총보수 : 연 0.2926%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2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6월 07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84%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0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6월 07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84%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0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6월 07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6월 0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배당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6월 07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3%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3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6월 0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3%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3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China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6월 07일

4. 대비표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6월 0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생략)	**1.재무정보**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China 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6월 07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6월 0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생략)	**1.재무정보**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및 전환 대상 투자신탁 내용 업데이트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6월 07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7.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④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

	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⑥ <삭제> ⑧ <삭제>

	⑨수익자가 제1항의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제4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⑨수익자가 제1항의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제4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8.47%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56%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전환절차 및 방법**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7) <삭제> 10) <삭제> 11) <삭제>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6월 07일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 전환대상 투자신탁 명칭 수정 - 전환대상 펀드의 전환 기준시간 변경(장마감시간 연장)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8.47%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56%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수익자가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수익자가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 <삭제> 10) <삭제> 11) <삭제> (순차적 연번 변경) (3) 수익자가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자[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수익자가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9)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6) <삭제>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8) <삭제> (9)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자[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

	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주식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채권]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